

「주거래 정기예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주거래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고단위 플러스 특약』, 『거치식예금 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의 종류

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제4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제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은 1만원) 이상이며, 최고가입금액은 5천만원 이하로 1인당 가입한도는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제6조 이자지급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자율(이하 “기본금리”라고 함)로 설편 이자를 원금과 함께 만기일에 일시지급합니다.
-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제7조의 우대금리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
- ③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자율로 설편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④ 예금의 만기일 이후 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로 설편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 우대금리

제6조 제2항의 우대금리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1. 거래우대금리 (최고 연 0.3%까지 적용)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아래표의 실적인정기준에 따라 거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 0.2%,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 0.3%의 거래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거래 항목	실적인정기준
급여 ^{주1)}	이 예금의 신규 가입일 이후 3개월이 되는 해당월의 말일까지 이 예금의 가입자 본인 명의의 당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1회 이상 이체 시
아파트관리비 ^{주2)}	
4대연금 ^{주3)}	
카드가맹점대금 ^{주4)}	
하나카드 또는 당행 제휴카드 결제 대금 ^{주5)}	
합계 월 30만원 이상	

주1) 이 예금에서 인정하는 급여이체 실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으로부터 입금건별 50만원 이상 예금가입자가 지정한 급여일에 입금
2. 타인으로부터 입금건별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로 적요에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Salary, Pay, 상여, 성과, 보너스, Bonus로 표시하여 입금
단, 당행 창구 및 자동화기기 입금 시에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2) 하나카드의 아파트관리비카드 결제계좌를 당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지정하고 결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3) 4대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입니다.

주4) 카드가맹점대금은 하나카드, BC카드 가맹점 대금에 한합니다.

주5)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포함하며 당행 제휴카드는 현대카드에 한합니다.(2016.05 기준)

주6) 도시가스요금, 전기료, 통신요금, 보험료, CMS 관련, 국민연금보험료, EDI 이체 항목 중 월 3건 이상 이체 시에만 인정합니다.

2. 평균잔액우대금리(최고 연 0.2%까지 적용)

은행은 이 예금의 신규 가입월의 다음달로부터 3개월 동안 가입자 본인 명의의 당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평균잔액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평균잔액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연 0.1%
- 5백만원 이상 연 0.2%

제8조 일부해지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만기해지 포함 총3회 가능하며, 이자율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단, 일부해지 후 잔액은 1백만원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4년 5월 23일부터 가입하는 계조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약관을 적용 받습니다.

<부칙>

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